

인천광역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094
----------	------

제출년월일 : 2014.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사유

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의사정족수 기준변경 및 심의위원이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4조)

나. 현행 금고지정 절차 중 “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을 “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안 별표1,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인천광역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인천광역시금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금고”를 “인천광역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시와의 협력사업”으로 한다.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제4조제6항 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평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⑩ 심의위원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⑪ 심의위원이 제10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을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대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p>※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p>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p>※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p> <p>※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p>	10 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19
	나. 공급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5
	라. 정기에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4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3. 시민이용의 편의성		2
	가.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21
	나.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6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라. 관내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3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5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II.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

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7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6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9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2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민이용의 편의성(21점)

가.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5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 (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3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10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

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5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이나 향후 계획,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지방 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u>인천광역시</u>(이하“시”라 한다) 공금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의 관리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u>인천광역시금고</u>(이하“금고”라 한다)의 지정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효율성·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① ----- ----- -----<u>인천광역시</u>----- ----- -----<u>인천광역시금고</u>----- ----- ----- ----- ----- ----- ----- -----</p>
<p>제2조(금고지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방식에 따라 <u>금고</u>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p>	<p>제2조(금고지정) ① ----- ----- -----<u>인천광역시금고(이하“금고”라 한다)</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해당</u>----- ----- -----</p>
<p>제3조(금고지정 기준) ① 금고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제3조(금고지정 기준) ① ----- ----- ----- ----- 1.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2. <u>시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u></p> <p>3.~4. (생략)</p> <p>5. <u>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u></p>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p> <p>①~⑤ (생략)</p> <p>⑥ <u>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p> <p>1.~3. (생략)</p> <p>⑦ <u>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⑧ (생략)</p> <p>⑨ <u>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⑩ <u>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u></p>	<p>2. <u>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u></p> <p>3.~4. (현행과 같음)</p> <p>5. -----<u>시와의 협력사업</u></p>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p> <p>①~⑤ (현행과 같음)</p> <p>⑥ ----- <u>심의·평가한다.</u></p> <p>1.~3. (현행과 같음)</p> <p>⑦ ----- ----- ---, <u>재적위원 3분의 2 이상</u>--- ----- -----.</p> <p>⑧ (현행과 같음)</p> <p>⑨ <u>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u></p> <p>⑩ <u>위원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여서는 아니 된다.</u></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5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②~④ (생략)</p>	<p>① <u>위원이 제10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5조(지정절차) ① ----- ----- ----- ----- ----- ----- --, 「지방재정법」 제77조의 따른 -----.</p> <p>②~④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제77조(금고의 설치)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시행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제103조(금고업무의 일부 대행) <input type="checkbox"/>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특이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관련 법령 발췌사항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03조(금고업무의 일부 대행) ①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재정수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및 안전행정부 예규 개정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에 따라 소요비용이 발생
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

4. 작 성 자

안전행정국 세정과장 정 철 환